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5. 10 선고 2022나10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박종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현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282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37,377,7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C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813,10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60,813,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 12. 3. 접수 제106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A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등

한편,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19. A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방법원 2021간회합1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A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B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나,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2. 11. 23.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되어 원고가 재차 소송수계를 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9. 10. 18. A 소유이던 전남 구례군 E 임야 64,200㎡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담보물로부터 원고의 채권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9. 7. 10. 이후인 2019. 10. 18. 마쳐졌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사해행위 당시인 2019. 7.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송주희, 판사 류지원

별지

목 록

1. 제주시 F 대 231㎡

2. 제주시 F

[도로명 주소] 제주시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13.21㎡

2층 105.23㎡

지1층 69.46㎡, 끝.

